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연계·통합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로, “기술서기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

이터 관리 등 총괄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한다.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 밑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u> <u>②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u> <u>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u> <u>· 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u> <u>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u> <u>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u> <u>· 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u> <u>·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u> <u>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u>	<u><삭 제></u>

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

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
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

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
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
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
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
터팀장을 두며----- 기
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
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 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

	<u>선</u> 3. <u>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u> · <u>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u> <u>항</u> 4. <u>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u> · <u>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u> 5. <u>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u> <u>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u> <u>한 사항</u> 6. <u>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u> <u>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u> <u>선에 관한 사항</u> 7. <u>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u> <u>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u> <u>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③ (생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u>제6조제3항</u>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 ----- <u>제7조제6항</u>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명으로 본다.</u>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1</u>	<u>10</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4</u>	<u>25</u>	+1
•	•	•	
•	•	•	